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 규정 신설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47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 규정 신설 등	2
※ 참고자료	7
1. 대발생곤충(후보종) 특성 및 국내 피해사례	7

I. 제안경위

2025년 8월 7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규정 신설 등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발생 곤충의 방제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3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국민의 건강,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신설>	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방제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곤충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현행	개정안
	<u>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u>1.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u> <u>2.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u> <u>3. 국민 행동요령의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u> <u>4.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 및 보급</u>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실태 조사 및 주민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수도권 등에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¹⁾ 등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²⁾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붉은등우단털파리 관련 민원 현황]

연도	'22	'23	'24	'25
민원건수	4,448	6,428	13,127	9,952

자료: 기후부

다만, 2025년 현재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대벌레 등 일부 곤충³⁾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이른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 규정과 방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타법에서 질병 등 건강상의 피해 유발로 관리 중인 곤충의 경우 중복 관리로 인한 예산·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2조제12호의 대발생곤충 정의 중 ‘국민 건

1) <참고자료> 대표적 대발생 곤충: 대벌레, 붉은등우단털파리, 미국선녀벌레, 갈따구류, 동양하루살이

2) “이 정도면 해충”...수도권 덮친 ‘러브버그’ 민원 70배 급증,(서울신문, 2025.06.29.)
(<https://m.go.seoul.co.kr/news/society/enviroment/2025/06/29/20250629500070?cp=go>)
동양하루살이·‘러브버그’ 민원 증가...서울시, 친환경 방제(MBC, 2025.06.18.)
(<https://v.daum.net/v/20250618131801117?f=p>)

3) 대벌레의 경우 「산림보호법」(산림청) 상 수목에 피해를 미치는 ‘산림병해충’에 해당함에 따라, 지자체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여 관리 중임.

4) 참고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등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임.

강' 피해 부분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고,⁵⁾

[국내 곤충 관리 제도 현황]

구분	예시	소관 법률	내용
위생 해충	모기 파리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질병을 매개하는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미치는 해충에 대하여 지자체에 구제(소독) 의무 부여
규제 해충	미국 선녀벌레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유입·확산 방지 위해 국가·지자체에 검역·예찰·방제 등 조치 의무 부여
산림 해충	대벌레	산림청 「산림보호법」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유입·확산 방지 위해 국가·지자체에 예찰·방제 등 조치 의무 부여

자료: 기후부

대발생곤충은 조사, 감시, 방제 등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정되므로, 안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별도의 방제·관리 대상을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⁷⁾.

둘째, 경기도는 대발생 곤충 방제를 위해 별도 인력을 상비하는 것은 지자체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해당 업무를 해충 방제 예산 및 숙련된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보건소가 담당할 수 있도록 기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의 공동대응을 명시하여야 한다⁸⁾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5)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국민의 건강**,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안 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방제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곤충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이외에 안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친환경적 방제 방법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살충제 등 화학적 방제 방법이 이미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8) 이외에도 경기도 등은 악성 민원에 인한 불필요한 방제·과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대발생 곤충에 대한 방제·관리 계획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해당 의견에 대해 기후부는 개정안의 대발생 곤충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관리 중인 곤충은 관리 목적이 상이하여 대발생 관리업무를 질병청 소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방제 인력 및 예산을 기 구비하고 있는 보건소 등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⁹⁾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을 제출하였음.

- 9)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출함.

※ 참고자료 : 대발생곤충(후보종) 특성 및 국내 피해사례

구분	사 진	종명 및 피해 정보
대벌레	 <대벌레 수컷(정계산)>	* 자생종 • (피해지역) 서울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등 • (피해사례) '14년도 이후, 도심내 대발생하여 불쾌감 조성 및 식엽에 의한 손상 • (대응) 제한적 화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등
붉은등우단 털파리 ※ (별칭) 러브버그		* 외래종(중국) • (피해지역) 서울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등 • (피해사례) '22년 이후, 도심내 대발생하여 불쾌감 유발 • (대응) 도심 내 제한적 화학적 방제, 서식지 물리적 방제 등
미국 선녀벌레		* 외래종(미국) • (피해지역) 전국 (생태계교란종, 2019) • (피해사례) '11년도 이후, 농작물 및 식물 흡즙을 통해 발육 저해, 시들음 등 피해 유발 • (대응) 농작물 화학적 방제, 물리적 제거, 천적인 선녀벌레집게벌 이용
깔따구류		* 자생종 • (피해지역) 전국 • (피해사례) '07년에 최초 발생하였다가, '20년부터 수돗물에서 발견 현상 급증 • (대응) 정수처리시설 내 유입가능 경로 차단
동양 하루살이 ※ (별칭) 팅커벨		* 자생종 • (피해지역)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남양주, 세종시 일대 등 • (피해사례) '02년 한강 일대에 대발생한 이후, 매년 대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불쾌감 유발 • (대응) 하천가에서 나타남에 따라 식수원 보호 및 보호수종 고려, 주로 물리적 방제 실시